청탁거절은 단호하게 청렴실천은 당당하게

농림축산식품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축산물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도입 고시 알림

1. 축산물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와 관련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축·수산물에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도입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021-54호)」 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왔습니다.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 축산물의 경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 및 수산물의 경우 "어류"에 개별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동물용의약품** 검출 시 일률기준(0.01 ㎎/㎏ 이하) 적용

○ 낮은 농도에서도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장보조제(성장촉진, 체중증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성분 등), 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는 '불검출' 기준 적용

3. 이에 관련부서 및 기관·단체에서는 축산물의 잔류물질 PLS가 **2024년 1월 1일**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공문 1부. 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신자 축산정책과장, 축산환경자원과장, 방역정책과장,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방역감시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동물검역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동물약품관리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동물약품평가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세균질병과장), 서울특별시장(식품정책과장), 부산광역시장(농축산유통과장), 대구광역시장(농산유통과장), 인천광역시장(농축산유통과장), 광주광역시장(생명농업과장), 대전광역시장(농생명정책과장), 울산광역시장(농축산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농업축산과장), 경기도지사(동물방역위생과장), 강원도지사(동물방역과장), 충청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충청남도지사(동물방역위생과장), 전라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전라남도지사(동물방역과장), 경상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경상남도지사(동물방역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동물방역과장),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장(동물위생시험소장), 동물위생시험소장(축산물검사팀장),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동물위생시험소장),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정밀검사과장),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축산물검사과장),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동물위생시험소장),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축산물검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장(축산물분석과장),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장(축산식품검사과장), 충청북도동물위생시험소장(축산물검사과장), 충청남도동물위생시험소장(축산물위생과장), 충청남도동물위생시험소장(정밀분석과장),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장(축산식품검사과장),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장(축산물위생과장),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장(축산물안전과장), 경상북도동물위생시험소장(정밀분석과장), 경상남도동물위생시험소장(축산물위생과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장(축산물안전과장),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축산위생과장), 경상북도동물위생시험소장(축산물검사과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사)전국한우협회, (사)한국낙농육우협회장, (사)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장, (사)한국육계협회, (사)한국오리협회, 대한수의사회, 한국동물약품협회, 농협경제지주

주무관 **이창현** 수의사무관 **남궁종환** 농축산물위생 품질관리팀장 **홍인기** 전결 2021.7.1.

협조자

시행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3287 (2021. 7. 1.) 접수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어진동) / http://www.mafra.go.kr

전화번호 044-201-2976 팩스번호 044-868-9219 / Lch0111@korea.kr / 비공개(5)